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가. 현 성주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나. 동 조례 중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정비하는 한편,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문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변경

나. 지방세법으로 감면조항 이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지방세법 이관에 따른 조례 폐지안

다.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세목 삭제에 따른 관련 조항 폐지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감면 폐지안

라. 감면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부분

-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 폐지안
-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 폐지안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감면 폐지안
-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폐지안

마.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

바. 기타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및 타 법령인용 조문정리

4. 관련법령

가. 지방세법

나.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5. 검토의견

□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지방세법의 개정 및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이며, 또한 성주군세 감면조례의 전조문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개정의 법적근거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목적을 실현하고 현실과 부합되진 않는 조문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성주군세 감면조례 전면개정의 배경입니다.

○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추진되는 자치단체의 과세공평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본 조례 전면개정은 형식적 절차적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